

간행물번호

11-1352000-002446-13

##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2018. 1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 <목 차>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요약본 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요약본 2.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요약본 3. 국민연금 기금운용개선방향

국민연금 재정계산 업무처리지침



## < 목 차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	1
1. 추진경과 .....	3
2. 재정추계의 주요 가정 .....	4
3. 재정추계결과 .....	5
4. 민감도분석 .....	9
5. 재정평가 .....	11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	15
제 I 장 제4차 재정계산의 의의와 환경 .....	17
1. 재정계산의 의의와 역할 .....	17
2. 노후소득보장의 환경 .....	18
제 II 장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	20
1. 도입 .....	20
2.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	20
제 III 장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 가능성 .....	24
1. 재정목표의 설정 .....	24
2. 재정 안정화 방안 .....	25
제 IV 장 정책제언과 향후 과제 .....	29
1. 정책제언 .....	29
2. 향후 과제 .....	29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 방향 .....	33
I. 제4차 재정계산 추진 경과 .....	35
II. 국민연금 기금운용부문의 개선 사항 .....	36
1. 재정안정화 및 자산배분 .....	36
2. 지배구조 및 성과평가 .....	36
3. 자산군별 발전 방안 제시 .....	37

국민연금 재정계산 업무처리지침 .....	39
제1장 총칙 .....	41
제2장 재정계산의 범위 .....	41
제3장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	42
제4장 추진일정 등 .....	48
제5장 보  칙 .....	49
부  칙 .....	50

## < 표 차례 >

<요약 표 1> 재정수지전망 .....	6
<요약 표 2> 부과방식비용률 GDP 대비 급여지출 추이 .....	8
<요약 표 3> 민감도분석 결과 .....	10
<요약 표 4>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	12
<요약 표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 .....	20
<요약 표 2> 국민연금 단계적 재정안정화 방안 (최종 필요보험료율 17.2%) .....	28

## < 그림 차례 >

[요약 그림 1] 재정수지전망 .....	7
[요약 그림 2] GDP 대비 급여지출 및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	8
[요약 그림 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19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2018. 1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1. 추진경과

### ■ 제4차 재정계산

-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이에 따른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
- 금번 재정계산은 제4차 재정계산으로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 제2차 재정계산은 2008년, 3차 재정계산은 2013년에 실시

### ■ 제4차 재정계산 추진체계

-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재정계산업무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재정계산지원단 설치

###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 동 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정부부처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재정계산에 필요한 재정추계모형의 검토, 주요 변수의 가정설정, 재정수지전망 등의 역할 수행
- '17년 8월 말 발족하여 '18년 9월 말 기준으로 재정추계위원회 회의 24회 및 소위원회 회의 1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의 공동 Workshop 1회 개최

## 2. 재정추계의 주요 가정

### ○ 인구 가정

- 인구 가정은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의 중위가정을 적용하고, 2065년 이후에 대해서는 연금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추가 50년(~2115년)에 대한 추계결과를 제공
- 2065년 이후 출산율과 국제이동 가정은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65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65년 이후 사망률 가정은 50년 추계(2015~2065)와 동일하게 Li-Lee-Gerland(2013) 모형을 적용하여 예측하여 2088년<sup>1)</sup>에 남자 90.8세, 여자 93.4세로 가정

### ○ 경제변수 가정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장기 경제전망치를 기초로 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재정추계위원회의 의견(국가재정운용계획 2017~2021)을 반영
- 인구추계 가정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그 전망치와 부합하는 실질임금상승률, 실질금리를 전망한 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가정과 결합하여 명목임금상승률 및 명목금리의 전망치를 도출함
- 실질경제성장률은 2018~2020년 기간 중 연평균 3.0%에서 2021~2030년 2.3%, 2041~2050년 1.0%, 2051~2060년 0.8%로 둔화되고, 그 이후 기간에는 0.6%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
- 실질임금상승률은 2018~2020년 기간 중 연평균 2.1%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1% 중반대로 전망

1) 4차 재정계산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향후 70년'인 2088년까지 추계함

- 실질금리는 2018~2020년 1.1%에서 2040년 1% 중반 대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소폭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1% 초반대로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현재 물가안정목표인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제
- 제도변수 가정
-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0년 ~ 2017년 가입률 자료를 시계열모형에 적합시켜 전망, 90.5%(2017년 기준)에서 93%(2035년)까지 증가 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지역가입자 비율은 현재 36.4%(2017년 기준)에서 장기적으로 2035년에 26.4%까지 감소 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 비율은 현재 49.7%(2017년 기준)에서 점차 낮아져 40%(2035년)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현재 68.9%(2017년 기준)에서 점차 높아져 73.2%(2035년)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 사업장가입자 대비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현재 51.1%(2017년 기준)에서 47.7%(2032년)까지 하락하고 이후 점차 높아져 50.9%(2088년)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 3. 재정추계결과

#### ■ 재정추이

- 국민연금은 초기에 부과방식비용률을 상회하는 보험료율이 적용됨으로써 현재까지 상당한 적립기금이 축적되어 왔음
- 부과방식비용률 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왔으나, 완전적립에 필요한 보험료율보다 낮게 설정되어 부분적립의 형태를 띠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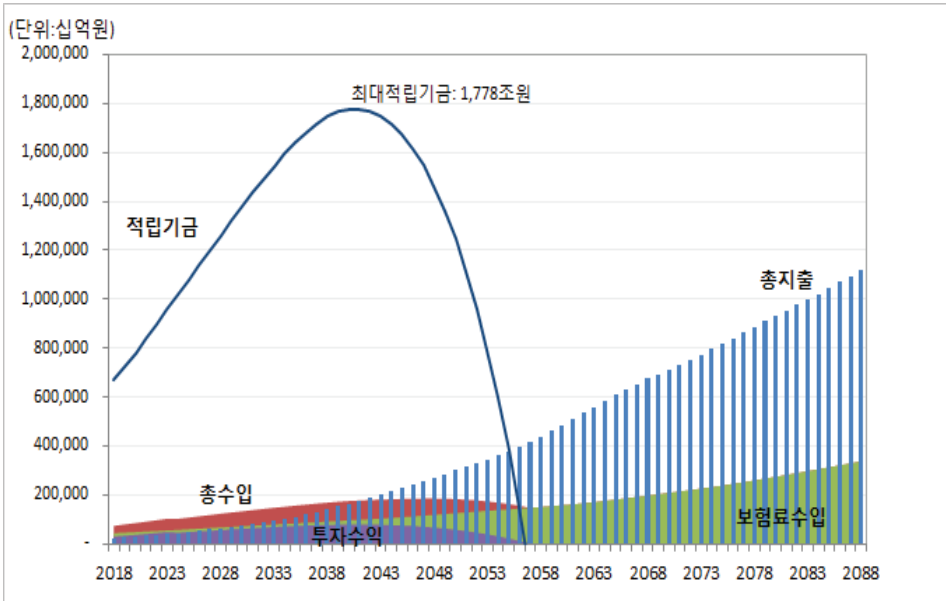
- 앞으로 20여 년간은 제도가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게 되므로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
-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30년부터는 당년도 지출이 보험료수입을 상회하게 되고, 2042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을 상회하게 되어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 이에 따라 적립기금은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직전 연도인 2041년에 최고 1,778조원(1,108조원, 2017년 불변가)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짐
  - 2013년 재정계산에서는 2044년에 최초로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

<요약 표 1> 재정수지전망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배율	보험료율	적립기금 (2017년 불변가액)
		총수입	보험료수입	투자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8	671,383	73,386	43,704	29,682	23,645	23,009	49,741	26.3	9.0	659,512
2020	780,610	84,745	48,028	36,717	29,190	28,500	55,556	24.8	9.0	737,031
2025	1,078,656	107,458	59,620	47,838	48,264	47,835	59,194	21.1	9.0	922,431
2030	1,378,515	132,884	71,537	61,347	73,509	72,985	59,375	17.9	9.0	1,067,730
2035	1,641,860	156,078	83,537	72,541	109,643	109,003	46,435	14.6	9.0	1,151,822
2040	1,776,319	174,861	95,926	78,934	163,722	162,941	11,139	10.8	9.0	1,128,676
2041	1,777,883	177,213	98,183	79,029	175,649	174,837	1,564	10.1	9.0	1,107,519
2042	1,768,941	179,062	100,426	78,635	188,003	187,158	-8,942	9.5	9.0	1,080,342
2045	1,673,943	183,658	108,758	74,899	227,237	226,286	-43,580	7.6	9.0	963,359
2050	1,244,339	182,881	125,396	57,485	298,884	297,728	-116,004	4.6	9.0	648,613
2055	384,976	162,463	140,908	21,555	377,053	375,651	-214,590	1.6	9.0	181,752
2057	-123,881	147,200	147,200	-	415,992	414,477	-268,791	0.3	9.0	-56,215
2060		157,690	157,690	-	485,289	483,593	-327,599		9.0	
2065		180,876	180,876	-	607,810	605,764	-426,934		9.0	
2070		208,618	208,618	-	713,127	710,663	-504,509		9.0	
2075		238,404	238,404	-	815,338	812,381	-576,934		9.0	
2080		274,085	274,085	-	931,141	927,604	-657,056		9.0	
2085		313,103	313,103	-	1,045,131	1,040,906	-732,028		9.0	
2088		337,382	337,382	-	1,119,935	1,115,234	-782,553		9.0	

[요약 그림 1] 재정수지전망



○ GDP 대비 재정수지전망

- GDP 대비 적립기금은 2018년 37.2%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4년에 48.2%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
- GDP 대비 급여지출은 2018년 1.3%에서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9% 대 수준에 도달

■ 수지구조

○ 부과방식비용률(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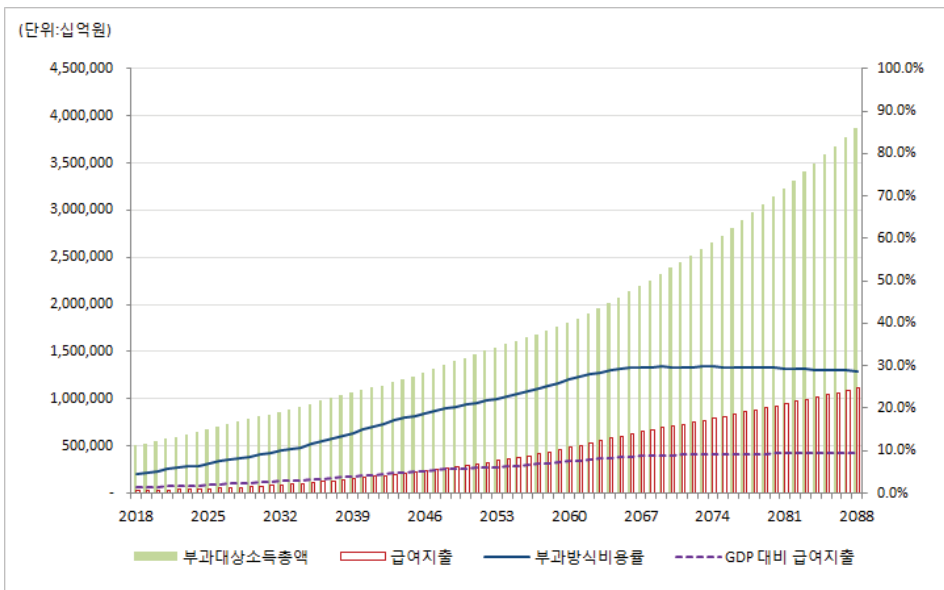
- 부과방식비용률은 2020년 5.2%에서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29% 수준을 유지

<요약 표 2> 부과방식비용률 GDP 대비 급여지출 추이

(단위 : 경상가, 십억원, %)

연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총액 (가)	급여지출 (나)	GDP (다)	GDP대비 보험료부과 대상소득총액 (가)/(다)	GDP대비 급여지출 (나)/(다)	부과방식 비용률 (나)/(가)
2018	502,305	23,009	1,806,963	27.8	1.3	4.6
2020	549,469	28,500	1,984,946	27.7	1.4	5.2
2025	678,436	47,835	2,445,452	27.7	2.0	7.1
2030	811,739	72,985	2,924,580	27.8	2.5	9.0
2035	947,973	109,003	3,407,651	27.8	3.2	11.5
2040	1,091,203	162,941	3,928,053	27.8	4.1	14.9
2045	1,241,018	226,286	4,486,486	27.7	5.0	18.2
2050	1,434,787	297,728	5,096,405	28.2	5.8	20.8
2055	1,613,011	375,651	5,760,773	28.0	6.5	23.3
2060	1,805,740	483,593	6,454,771	28.0	7.5	26.8
2065	2,072,279	605,764	7,181,179	28.9	8.4	29.2
2070	2,390,572	710,663	7,966,870	30.0	8.9	29.7
2075	2,732,050	812,381	8,869,334	30.8	9.2	29.7
2080	3,141,781	927,604	9,909,947	31.7	9.4	29.5
2085	3,589,548	1,040,906	11,068,147	32.4	9.4	29.0
2088	3,868,136	1,115,234	11,816,028	32.7	9.4	28.8

[요약 그림 2] GDP 대비 급여지출 및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 4. 민감도분석

- 조합시나리오에서는 인구가정과 거시경제변수가정의 조합에 의한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기금소진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큰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부과방식비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장래의 인구구조 시나리오에 따라서 부과방식비용률의 장기적인 추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 경제상황의 개선 여부에 따라서도 부과방식비용률 추이는 상당한 변화 폭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개별 시나리오의 변수들 중에서 기금운용수익률은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고, 관리운영비와 크레딧 급여 지출 관련 변화는 지출에만 영향을 미침. 그 외에 나머지 변수들은 수입과 지출에 모두 영향을 미침.
  - 금번 재정계산에서 설정된 변동폭 수준에 의한 재정 민감도는 전체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물론, 개별 변동폭 수준을 보다 확대할 경우 재정전망 결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 설정된 개별 변동폭은 해당 변수별 과거 실적 추이와 전망치의 추세를 반영하여 결정

<요약표 3> 민감도분석 결과

시나리오		적립기금		부과방식비용률			GDP 대비 급여지출			
		수지적자	기금소진	2060년	2070년	2088년	2060년	2070년	2088년	
기본가정 (중위중립)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조합시나리오	저위중립	2041년	2056년	30.0%	34.9%	37.5%	8.0%	9.9%	11.4%	
	고위중립	2042년	2058년	24.3%	26.0%	23.7%	7.0%	8.2%	8.2%	
	중위낙관	2044년	2059년	24.4%	26.8%	25.6%	6.7%	8.0%	8.2%	
	중위비관	2040년	2056년	29.7%	33.2%	32.6%	8.4%	10.1%	10.9%	
	저출산 대안	2042년	2057년	28.6%	33.3%	34.9%	7.8%	9.6%	10.8%	
	출산율 1.05 대안	2042년	2057년	29.3%	34.7%	37.7%	7.9%	9.8%	11.4%	
개별시나리오	기금투자 수익률	기본가정 + 0.1%p	2042년	2058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 - 0.1%p	2041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임금 상승률	기본가정 + 0.4%p	2042년	2057년	25.5%	28.2%	27.1%	8.4%	10.3%	11.6%
		기본가정 - 0.4%p	2041년	2057년	28.2%	31.4%	30.7%	6.7%	7.7%	7.7%
	경제활동 참가율	기본가정 + 0.3%p	2042년	2057년	26.8%	29.8%	28.9%	7.5%	9.0%	9.5%
		기본가정 - 0.3%p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임의 가입자	기본가정 + 0.1%p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 - 0.1%p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임의계속 가입자	기본가정 + 1.0%p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 - 1.0%p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기본가정 + 1.1%p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8%	28.9%	7.5%	8.9%	9.4%
		기본가정 - 1.1%p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7%	29.7%	28.8%	7.5%	8.9%	9.4%
	지역가입자 징수율	기본가정 + 0.3%p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 - 0.3%p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사업장 대비)	기본가정 + 0.5%p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5%
		기본가정 - 0.5%p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5%
	관리비, 크레딧 국고 지원	관리운영비 1.6%, 출산 크레딧 30%	2041년	2057년	27.0%	29.9%	29.0%	7.5%	9.0%	9.5%

## 5. 재정평가

### ■ 재정평가 방법 및 기준

- 국민연금의 재정평가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지불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정안정에 필요한 보험료를 산출
- 재정추계결과에 의하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 현행 보험료율로는 추계기간 동안인 향후 70년간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계됨
  - 부과방식비용률은 점차 증가하여 2088년에 28.8% 수준으로 현재 보험료율 9%와 큰 차이를 보임
- 재정평가는 ‘재정평가기간’,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적립기금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의 3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
  - 첫째, 재정평가기간은 재정추계기간과 동일하게 향후 70년으로 설정,
  - 둘째,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기금적립에 대한 목표는 적립배율<sup>2)</sup>을 기준으로 설정,
  - 셋째,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기금적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추정함
-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는 적립배율에 대한 복수의 기준을 설정,
  - 재정상태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과 정책목표에 따른 적정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금정책 논의가 가능하도록 함.

2) 적립배율은 해당년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기금 비율임

- 기금적립 목표에 대한 5가지 기준
  -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상태

■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 적립기금에 대한 5가지 목표를 적용하여,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추계함
- 보험료율 추정결과
  -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은 재정목표 및 인상시점에 따라 최소 16%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전망

<요약표 4>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보험료율 인상시점	재 정 목 표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유지 (적립배율)
2020년 일시인상	16.02%	16.28%	17.05%	18.20%	20.20% (17.3)
2030년 일시인상	17.95%	18.27%	19.25%	20.22%	22.20% (14.0)
2040년 일시인상	20.93%	21.36%	22.68%	23.04%	24.88% (10.0)

##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직위)	비고
위원장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위촉직
정부 위원 (2)	장호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당연직
	이주현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
민간 위원 (12)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위촉직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前원장	~2018.5.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위촉직
	김현태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	"
	이항용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간사	박성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2018. 11.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 제 I 장 제4차 재정계산의 의의와 환경

### 1. 재정계산의 의의와 역할

#### 가. 재정계산의 추진 경과

##### ○ 추진근거 및 취지

-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재정계산 제도가 도입됨
- 국민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

##### ○ 추진체계 및 경과

- (3개 위원회의 구성)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 (재정계산기획지원단) 각 위원회 및 재정계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설치·운영함
- 제4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 (기능) 제4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4차 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계산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검토
  - (구성) 위원장을 포함 15인 (간사 별도),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당연직 정부위원(2인, 국장급), 민간위원 12인, 간사
  - (편집위원회의 발족) 민간위원과 간사 포함 6인
  - (추진경과) 4차 제도발전위원회는 2017년 12월 4일 발족하여 제도발전위원회 회의 29회, 편집위원회 회의 4회, 재정추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의 합동위원회 1회 개최

## 나. 제4차 제도발전위원회의 과제

- 기존의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연금의 재정적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한 측면이 있었음
  - 또한, 1~3차 재정계산에서는 명확한 재정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교하고 다양한 조합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
-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목표의 설정과 급여-재정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 노후소득보장의 환경

### 가. 사회·경제적 환경

- 저출산율 지속과 급속한 고령화
  - 합계출산율은 1990년 중반 이후 크게 하락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1.30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음. 2017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3.8%이며, 2060년 41.0%로 증가할 전망
- 저성장 경제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노동생산성 정체, 가계부채의 증가 등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지속. 한편, 여성, 청년층, 그리고 노인층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노인빈곤 실태
  - 2016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6.5%로 전체 인구 빈곤율 14.7% 대비 약 3배.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내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 12.5%와 비교할 때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임

나. 연금제도적 환경

○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세 가지 제도들로 외형상 다층체계 구축

[요약 그림 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개인/ 주택·농지연금 등			257만명1)(가입)	
2층	퇴직금/퇴직연금 (DB, DC)	개인형 IRP		812만명2)(가입)	
1층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2,216만명(가입) 450만명(수급)3)		
	기초연금		499만명(수급)4)		
0층	국민기초생활보장			163만명(수급)	
대상	근로자	자영자	기타	공무원 등	대상

주: 1)세제적격 개인연금('15), 2)('16), 3)노령(360만명)·유족(68만명)·장애(7만명)·일시금(16만명)('17) 4)'18.4

○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

-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①적지 않은 사각지대, ②높지 않은 실질소득 대체율, ③낮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삼중고(三重苦)에 노출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장기적 역할분담 방향이 불분명함. 퇴직 연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연금제도 기능이 아직 미흡한 한계 노정

○ 4차 제도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고려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

## 제II장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 1. 도입

- 본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급여 및 가입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우선검토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2.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 가.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 검토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이자는 주장(소득대체율인상안)과, 현행유지하면서 다층체계를 통해 보완하자(소득대체율유지안)는 상이한 두 입장이 선명하게 대립됨

<요약 표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

	소득대체율인상안	소득대체율유지안(현행)
목표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 국민연금 역할 강화	다층체계 통한 노후소득보장
진단	국민연금 명목 및 실질 소득대체율 미흡	국민연금 수지 불균형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방안	명목소득대체율 점감 조치 중단	국민연금 내실화,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 연금화
기대효과	국민연금 기능 회복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균형, 지속가능성 확보

#### 나.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

- 의제가입기간을 20년이 아닌 사고 등에 의해 장애나 사망이 발생한 시점에서 노령연금 수급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 의제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혹은 지급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 논의

-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다.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 최저혼인기간 요건 5년에서 1년으로 완화
  - 소득이력 분할방식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함
- 수급권 발생시 분할방식에서 조기분할방식으로 전환
  - 이혼 시 즉시 소득이력 분할로 제도개선

#### 라.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

-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인상과 급여구조에 대해 향후 추가적 연구 필요
- 기초연금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검토
  - 하지만, 기초연금의 재정적 문제나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없거나 약했던 국민연금 초기 세대 노인들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현 연계 감액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도 존재

#### 마. 재직자 노령연금 폐지 검토

- 당분간 현행 제도 유지하되 장기적 폐지 재검토
  - 과잉보장의 문제, 수급자간 형평성 제고,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근로 고령자 증가,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재검토

## 바. 국민연금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검토

- 명문화 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함
  - 단, 보험료 인상 등의 제도개혁 추진 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지지확보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 3.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 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충

- 현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사업장 규모와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형태로 재검토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세부 방안\*이 함께 논의
  - \* 현행 농어업인 지원사업 (보험료의 1/2 이내(상한 :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준용 하거나 근로장려세제(EITC) 급여와 연계(EITC급여 지급시 연금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동시에 필요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됨

### 나.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 조정

- 원칙적으로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 일치 추진 필요
- 수급연령과의 일치는 국민 인식, 국민부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므로 추후 논의

### 다. 보험료부과소득 상한 기준 개선방안

-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 기준이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 인상 필요성에 대개 공감

- 다만, 부과소득 상한 인상이 국민부담, 연금재정, 수익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 필요

#### 라. 출산·군복무 크레딧제도 개선

- 출산크레딧 확대
  - 첫째 아이부터 자녀 당 12개월씩 크레딧 부여
- 군복무 크레딧 확대
  - 군복무 전체 기간에 대해 크레딧 부여. A값의 100%를 소득으로 인정
- 사전 지원방식(보험료 지원)으로 변경

####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 전환 검토

#### 바.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축소 검토

-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 하지만 최소가입기간 축소에 따른 연금액이 적은 수급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 현재도 임의가입 및 추납제도 등을 통해 10년 이상 기여하도록 하여 수급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유지 하되, 추후 검토가 필요

## 제III장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 가능성

### 1. 재정목표의 설정

#### ○ 문제점

- 국민연금 재정 목표가 불명확함에 따라 재정재계산 결과에 따른 제도개혁안 도출이 어려워짐
- 재정 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방식에 대한 이해에 혼란 초래

#### ○ 개선방안

- 국민연금의 불명확한 재정 구조 따른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목표 설정
- 국민연금 재정목표: 70년 기간 적립배율 1배
  - 재정추계기간 '70년'은 미래 평균수명을 감안할 때 신규 가입자의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설정
  - '적립배율 1배'는 재정추계 최종 연도에 1년 치 지급분이 있기에 재정안정화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음

#### ○ 한계 및 과제

- 재정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경로에 대한 합의 미형성
- 재정목표 설정에 따라 향후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현실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하며 사회적 동의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

## 2. 재정 안정화 방안

### 가. 급여-재정 패키지 '가'안

#### ○ 기본방향

-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요보험료율 즉각 인상
  - 보험료율 인상의 계기가 필요하며, 이에 소득대체율을 45%로 재조정(당초 2019년 44.5% 적용 → 45% 적용 및 이후 고정)
  - 소득대체율 5% 포인트 인상에 상당하는 보험료율(2%p)의 즉각 인상. 목표추계기간 중 재정에 중립적일 수 있는 보험료율은 시기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0.69%p~2.22%p 수준, 소득대체율 40%에서 소득대체율 45%로 조정)
- 각 재정추계 시점마다 70년 후까지 매 5년 주기로 보험료율 조정의 가상안을 제출하고, 향후 30년의 필요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국민 합의 도출
- 보험료율 조정의 목표 기간은 30년으로 설정
  - 보험료율 조정과 병행하여 일반재정 투입 등 다양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
    - \* 독일은 부과방식 제도 하에서 연간 연금지출의 24.2%를 일반재정으로 보조
    - 보험료율 조정의 목표는 장래 30년간 적립기금이 당해 연도 지출의 1배를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값으로 설정
      - \* 미국은 재정목표를 75년 간 수지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되, 단기목표로 추계시점부터 10년 동안 적립배율 1배 유지 설정
- 불확실성이 높고 수용성이 낮은 초장기 추계를 통한 일시적 개선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상황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제도의 주기적·단계적 조정 방식이 제도 환경의 급변 상황에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 미래세대 보험료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의 병행 추진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보험료 수입기반의 약화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재정안정화 방안

- 1단계: 소득대체율 점감 조치 폐지 및 보험료율 인상
  - 급여수준: 소득대체율 45%(2018년 이후 소득대체율 점감 조치 폐지)
  - 보험료율: 2019년부터 인상(9% → 11%)
- 2단계: 보험료율 인상
  - 30년 후 적립배율 1배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을 재정계산 시마다 실시 <예> 2033년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조정(12.31% 예상)
- 3단계: 일반재정 투입
  - 후세대 부담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일반 재정 투입

- (기본모델) 향후 70년 기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장기 전망 하에서 단기 30년의 재정 안정화 조치 실시
  - 제도외적 요소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재정 안정화 조치의 목표는 단기 30년으로 설정하되, 장기 추계를 통한 전망치를 함께 제시하여 단기 목표의 달성 필요성 부각
    - \* 불확실성이 높은 70년 추계결과를 반영한 보험료율 조정은 국민 수용성이 낮음
- ‘적립배율 1배’는 적립기금의 운용 수입 활용과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까지를 대비한다는 성격으로 접근
-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후세대 부담 완화 조치 도입 필요
  - 재정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18%를 넘어서게 될 경우, 일반재정 투입 등 보험료율 조정 외의 수단 강구

## 나. 급여-재정 패키지 '나' 안

### ○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기본방향

- 국민연금 보장성은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확보
  -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체계로 전환
- 가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 장기적으로 일반 조세 부담을 통한 노후소득 부담수준(기초연금),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
-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추구
  -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통한 재정안정화
  - 보험료율(기여) 조정과 지출 조정을 단계적·복합적으로 조정하여 향후 환경변화와 국민 수용성에 유연하게 대응
  - 다층체계를 통한 급여적정성 확보, 재원·재정방식 다변화 추구

### ○ 재정안정화 방안

- 재정 목표: 장기 재정균형
- 추계기간: 70년
- 균형지표 : 적립배율 1배
- 특징 : 세대간 형평성 및 한국형 연금체계 구축
  - 세대간 형평성: 미래 세대의 과도한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현세대의 재정 책임을 강화
  - 한국형 연금체계: 법정 의무연금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층 연금체계를 통해 계층별 노후소득보장 달성(중하위계층은 기초연금/국민연금 중심, 중상위계층은 국민연금/퇴직연금 중심)

<요약 표 2> 국민연금 단계적 재정안정화 방안 (최종 필요보험료율 17.2%)

	1단계 (2019~2029)	2단계 (2030~2088)
특징	기여 조정 (4.5% 확보)	기여·지출 조정 (보험료율 3.7%pt 분 확보)
방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13.5%)	필요보험료율 증당 위해 보험료율, 급여율,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합

- 1단계 기여 조정 (2029년):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 보험료율 조정스케줄: 2019~2029년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조정(13.5%까지 4.5%pt)
  - 인상 보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적응을 고려하여, 10년 이행기간을 설정해 단계적 인상
- 2단계 기여·지출 조정 (2030년 이후): 추가 재정안정화 조치
  - 기여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2030년부터 필요보험료율(3.7%pt)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추구
  - 보험료 추가 조정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급여 기대여명계수(Life Expectancy Coefficient) 통한 급여율 조정, 노인의 경제활동 상황을 감안한 수급연령 조정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
- 한계와 보완
  -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국민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국민적 이해 증진
  - 향후 노후소득보장성은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다층연금 체계에서 계층별 특성을 감안해 확보

## 제IV장 정책제언과 향후 과제

### 1. 정책제언

- 유족·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강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의제가입 기간 등의 방안이 필요
- 분할연금 수급기회를 강화할 필요.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단축 하며 연금급여는 이혼 시 소득이력을 분할하도록 권고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지원 사업장 규모와 지원기간의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적극 강구할 필요
-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수급개시연령과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을 조속히 조정할 것을 권고함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위해 사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첫째 자녀와 군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딧으로 부여할 것을 권고함
- 추계기간은 70년으로 하고 “적립배율”을 재정지표로 결정하였음. 기금의 수준은 추계연도 마지막 해에 급여지급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적립배율을 1배로 설정함

### 2. 향후 과제

#### 가. 기초연금 발전방안 논의

- 국민연금의 발전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구조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정착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필요

-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웠으며, 엄밀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기초연금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향후 과제
  - 노후소득보장 기능 측면에서 기초연금의 성격 명확화
    - 준보편적인 제도 유지 (또는 보편적인 제도로 확대)
    - 현재보다는 선별성을 강화하는 대신 최저소득보장 기능 강화
  - 기초연금 급여구조(정액형, 보충형, 정액형과 보충형의 혼합구조) 중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필요
  - 적정 지출규모와 재원마련 방안, 후세대 부담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

#### 나.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립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
-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대한, 상이한 두 가지 견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재정 안정화 방안(조기에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 달성 및 세대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적 재정불확실성의 문제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각 단계마다 평가를 통해 중기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다. 재정계산제도 개선 제언

- 재정계산과 재정안정화 방안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
  -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제도 조정이 통합 과제로 명시되어 있음. 이때 정부가 제출하는 “종합운영계획”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돼야 하는지 여부, 즉 ‘장기 재정 균형 방안(재정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담겨야 하는가가 불분명함
  - ‘장기 재정균형을 위한 조정안’의 명확한 의미에 대한 국민연금법 법령 정비가 필요
-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다룰 제도개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대두
  - 재정계산에서는 중장기 재정 전망에 따라 ‘장기 재정 균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직위)	비고
위원장	김상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위촉직
정부 위원 (2)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당연직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민간 위원 (12)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부교수	위촉직
	권문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중도 사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공적연금연구센터장	"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홍백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간사	김헌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 방향

2018. 11.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 I. 제4차 재정계산 추진 경과

-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에 의거하여, 2003년 처음 개시되었던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08년에 제2차, 2013년 제3차에 이어, 올해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하였음
  - 이번 제4차 재정계산은 「재정추계위원회」(’17.8~’18.9)의 발족을 시작으로 잇따라 「제도발전위원회」( ’17.12~’18.9)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 ’18.1~’18.9)를 순차적으로 구성·운영하였음
  - 이 가운데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 기금운용 발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음
-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위원장(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정부위원 3인, 민간위원 12인 총 1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18.1월 발족 이후 총 17회 회의와 1회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거시적 관점 하에 「장기재정안정 및 자산배분」, 「지배구조 및 성과평가」를, 미시적 관점 하에 「자산군별 발전 방안」을 대주제로 선정하고, 각 주제별 필요에 따라 세부주제를 선정하여 총 9개의 과제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였음

## II. 국민연금 기금운용부문의 개선 사항

### 1. 재정안정화 및 자산배분

- 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1년경 약 1,778조원에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기금운용목표는 부재한 상황
  - 장기 기금운용목표(목표수익률)는 재정목표, 재정 안정화방안(제도 개혁)과 연계되어 설정되나, 이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
  - 이에 선택 가능한 재정목표별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기여분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또한, 향후 장기 목표가 설정된다면, 장기 목표와 중·단기 자산배분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이에 기금의 장기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규범적인 장기 기준 포트폴리오(Norm Portfolio) 설정 방안 제시

### 2. 지배구조 및 성과평가

- 기금규모 급증에 따라 적극적 대응 능력 및 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한 기금운용체계를 마련할 필요
  - 이에 법률 개정 전 단계로 복지부 직제 일부 개편, 위원의 충실의무 신설 등 기금운용위원회 활성화 방안 제시
- 기금의 장기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평가 보상체계 마련 필요
  - 이에 정량평가 성과지수를 장기운용 운용 수익률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 기본급의 비중이 높은 현재의 보상체계를 유지하되 기본급의 수준 상향 방안 제시

### 3. 자산군별 발전 방안 제시

- 최근 책임투자 인식 확산과 더불어 국민연금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 요구 형성
  - 이에 책임투자 철학 및 개념 재정립 방안, ESG의 단계적 확대 적용 방안 등 제시
-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른 국내채권 및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시 공정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 인수·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세 부기준 구체화 방안 등 제시
  - 중·장기 투자 전략에 따라 국내채권 시장 비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국내채권 투자 비중을 축소시키는 대신, 해외 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 제시

##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구성

직책	성명	소속(직위)	비고
위원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장	위촉직
정부위원 (3)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당연직
	김동익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	〃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
민간위원 (12)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위촉직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
	박종상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이성엽	한영회계법인 이사	〃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간사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 직무대리	

# 국민연금 재정계산 업무처리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계산 시 유의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계산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 시 인구·경제 등 가정변수와 가입자·수급자 등 제도 기초변수 설정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마련 시에는 각계 전문가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3. 재정계산 시행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장 재정계산의 범위

제3조(재정수지에 관한 계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정추계기간 설정
2. 재정목표 및 재정건전성 평가척도 검토

3. 추계에 필요한 인구·경제변수 등 가정변수 검토, 설정
4. 추계모형 및 가입율·징수율 등 제도 기초변수 검토, 설정
5.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재정수지 전망의 제시
6. 가정변수 및 제도 기초변수 변경에 따른 재정전망 및 평가
7. 이전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 및 변화요인 분석
8. 그 밖에 재정수지 계산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이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2. 국민연금기금 운용목표 및 운용전략 등 중장기 기금운용방향
3.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3장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제5조(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국민연금재정추

계위원회(이하 “재정추계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②재정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에 관한 사항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수지 계산과 관련하여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

제6조(재정추계위원회의 구성) ①재정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연구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부위원 :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의 4급 과장급 이상 국가공무원
2. 민간위원
  - 가.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 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다. 지역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라.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6인

④각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재정학, 경영학, 회계학, 통계학, 수학, 보험수리 또는 보험계리학 등을 전공하고 재정추계, 국민연금제도, 기금운용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경력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정추계 위원회의 전문성 ·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수,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조정하여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재정추계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추계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재정추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재정추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실장급 이상의 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관리, 각종 일정관리 및 제반 서무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재정추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및 의견청취) ①재정추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각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위원장은 재정추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다음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보고하고, 재정추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채택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재정추계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추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부연구위원급이상으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록 관리, 각종 일정관리 및 제반 서무업무를 처리한다.

③각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는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②제도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연

구·검토를 의뢰한 사항

제15조(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이하 “기금운용발전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②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 개선과 관련하여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

제16조(준용규정)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도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추계위원회”를 각각 “제도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위원회”로 본다.

1. 제도발전위원회의 정부위원은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제6조 제3항 제2호를 준용한다.
2.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정부위원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의 4급 과장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하며, 민

간위원은 제6조제3항제2호를 준용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는 5인으로 한다.

제17조(재정계산지원단) ①재정계산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 재정계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계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국민연금연구원에 둔다.

②지원단은 국민연금연구원 관련 직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단장은 국민연금연구원장으로 한다.

③지원단장은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계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단장을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장 추진일정 등

제18조(추진일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2018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18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확보 및 사용) 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매 5년이 되는 해의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예산을 다음 각 호의 지출에 대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1.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및 재정계산지원단의 운영
2. 재정계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여론조사,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4. 재정계산결과 보고서 인쇄
5. 재정계산 결과 공시
6. 기타 재정계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결과의 발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21조(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계산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 5년이 되는 해의 직전 연도에 재정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 기구의 설치·운영, 세부일정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이 지침 이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 ①(적용기간) 이 지침은 제5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는 시점부터 제4차 재정계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